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2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위성곤 · 이광희 · 허영
박정현 · 이건태 · 김준혁
송옥주 · 서미화 · 양문석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0년 12월 15일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남영호가 침몰하여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원인, 구조·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음.

그로 인해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지역사회 치유가 50여 년간 지연되었고, 해상 안전과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남영호 사고에 관한 공식 기록과 조사는 미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평가가 시급함.

이에 사고 원인,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 관련 제도·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진실규명과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이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기록물 보존·전시, 안전교육 및 재난예방 프로그램 등 추모·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회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피해자 권익보호와 기록관리, 추모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사회가 재난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기반을 확립하여 유사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임.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남영호가 1970년 12월 15일 침몰함에 따른 사고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영호 침몰사고”란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남영호가 1970년 12월 15일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남영호 침몰사고 당시 남영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남영호 침몰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남영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5조(남영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남영호 침몰사고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영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영호 침몰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남영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남영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남영호 침몰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보고서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보
고서를 작성하고, 국회·대통령·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은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13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각하결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

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13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남영호 침몰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남영호 침몰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남영호 침몰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추모사업 등

제15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남영호 침몰사건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기념관의 건립

2.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6조에 따른 유족회와 협력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영호 침몰사고 위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유족회의 설립) ① 피해자는 희생자 추모사업의 추진, 피해자 권익보호 활동 및 남영호 침몰사고 관련 기록·증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족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족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족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족회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유족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참고인·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

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21조를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

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조사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